

# 고 김영익 집사 기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** 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고 김영익 집사 기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 연구소라 칭하며,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.

**제2조** (목적) 본 연구소는 고 김영익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재산을 기본 수익금으로 하여, 성결교회 및 한국 교회, 복음주의운동 연구를 통해 한국성결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복음주의운동의 신학 정립에 기여하고 성결교회와 한국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.

1.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및 지도
2. 영익기념강좌 개최
3. 출판사업
4. 기타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 제2장 임직원

**제4조**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전임 연구원 및 연구위원 약간명
3. 간사 1인
4. 조교 약간인

**제5조** (자격 및 임명) 1. 소장은 성결교회 역사를 전공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

2. 전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3.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.

**제6조** (임기)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** (직무) 1.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, 운영위원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.

2. 전임연구위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. 전임연구위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.

3.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4.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.

- 제8조** (연구위원회) 1.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.
2. 연구위원회는 소장, 전임연구위원,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- (1) 연구계획의 수립 (2) 학술지 『성결교회와 신학』의 편집 (3) 기타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- 제9조** (운영위원회의 설치) 1. 본 연구소의 연구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
2.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- 제10조** (임명)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11조** (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실행위원회

- 제12조** (실행위원회의 설치) 1. 본 연구소의 연구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실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.
2. 실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- 제13조** (임명)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14조** (의결) 실행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5장 재정

- 제15조** (재원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총당한다.
1. 고 김영익 집사 기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기금
  2. 서울신학대학교 연구지원비
  3. 외부의 연구지원비
  4. 자체수입금
  5. 기타
- 제16조** 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에 준한다.
- 제17조** (승인)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,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부칙

**제1조**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 단 본 연구소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고 김영익 집사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시행한다.

**제2조** (기타 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
**제3조** (발효) 본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4조** (개정) 본 규정은 2001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**제5조** (개정) 본 규정은 본 연구소의 명칭을 '성결교회역사연구소'에서 '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'로 변경함과 더불어 2008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